

# 2023 동물등록 **자진신고**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

**자진신고** 8. 7.~ 9. 30.

**집중단속** 10. 1.~10. 31.

# 반려견 등록,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

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**법적 의무사항**입니다

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,  
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.

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.  
(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


## ▶ 동물등록대상

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
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 
2개월령 이상인 개

※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(선택적 등록 : 내장형)

※ 등록대상동물을 판매(생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)하는 경우,  
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 
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.

## ▶ 동물등록 방법

**[내장형 방식]** **안전합니다**

-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
- ② 내장칩 시술(주사)
- ③ 등록 완료

### · 외장형 방식

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 
외장형 목걸이를 구입·부착 후 신청서 작성·제출

※ 동물등록대행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  
확인 가능

## ▶ 변경신고 대상

**10일 이내** -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
-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
- 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가  
변경된 경우

**30일 이내**

-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
-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
- 외장형 목걸이 분실, 파손으로 인한  
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## ▶ 변경신고 방법

시·군·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,  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

※ 단, 소유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함

자세한 문의사항은  
지자체 관련 부서(국번없이)120,  
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
1577-0954로 문의주세요.